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 · 운영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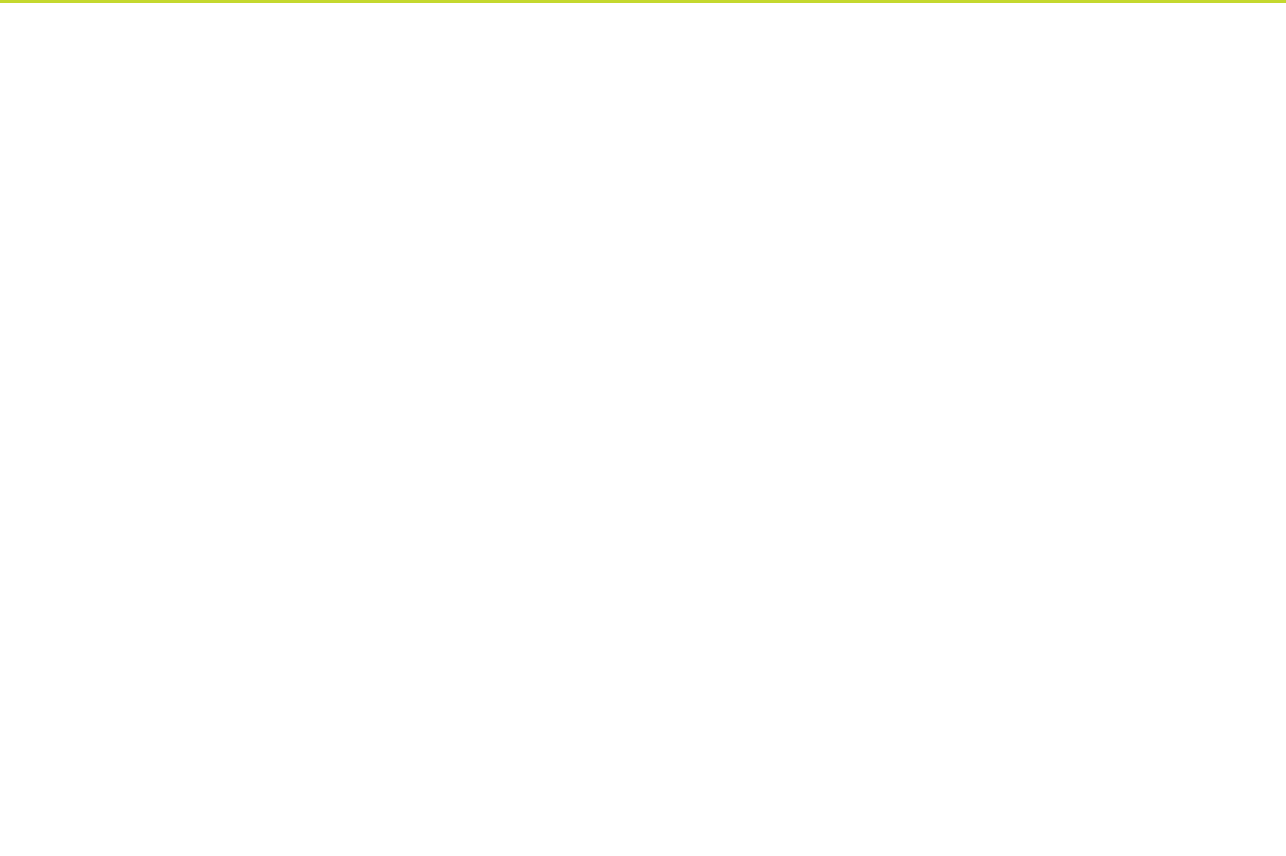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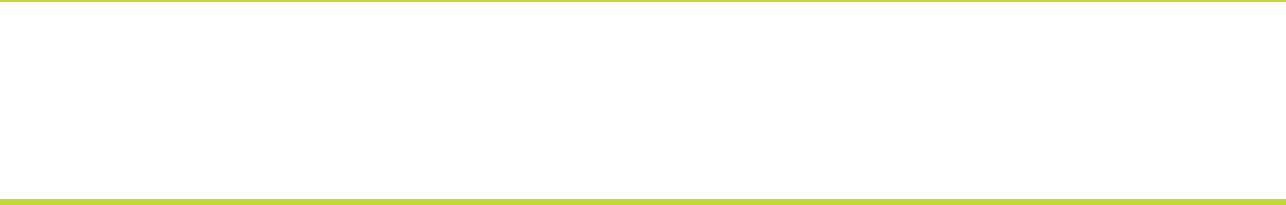
2014. 12.



# 목 차

I. 개요	5
1. 기본 사항	6
2. 유아숲체험원이란	7
3. 숲교육의 효과	8
II.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및 절차	13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14
2. 유아숲체험원 등록절차	18
III. 유아숲체험원 조성시 고려사항	19
1. 기본방향	20
2.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21
3. 공간 구획하기	23
4. 기반조성시 고려사항	24
5. 공간 조성시 고려사항	25
IV. 유아숲체험원 운영시 고려사항	37
V. 안전사고 대비	43
1. 안전사고 개요	44
2. 위험요소와 대처방안	46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57







## I. 개요

---

1. 기본 사항
2. 유아숲체험원이란
3. 유아숲교육의 효과

---

# I. 개요

---

## 1. 기본 사항

### ▶ 매뉴얼 목적

- 체계적인 산림교육 추진을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대상지 선정, 운영까지 그동안 추진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함

### ▶ 적용대상

- 본 매뉴얼은 국가 및 지자체의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를 위한 사항에 적용함



## 2. 유아숲체험원이란?

### ▣ 법적 정의(「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資質)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성장 /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의 조화<sup>1)</sup>

### ▣ 기본개념

-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
  -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
- \* '유아숲체험원'의 법적 정의에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설보다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큼(물론 유아숲체험원에는 대피소 등 시설물도 포함되지만 '야외체험학습장' 같이 공간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함)
- 인공 시설보다는 자연 체험 위주의 공간 조성을 지향
  -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 보다는 '숲을 만나고', '숲을 발견하고', '숲과 하나가 되는' 체험 활동 위주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형식이나 규칙, 통제와 제한은 최소화

- ⇒ 세상의 전체적인 조화 터득(유아는 자연이 삶에 주는 지혜 경험)
- ⇒ 자연을 탐구하고자 하는 탐구력과 모험심 자극(유아의 직관력과 상상력 증진)
- ⇒ 움직임을 통한 건강한 삶(유아의 존재는 움직이는 존재)
- ⇒ 자연을 소재로 한 놀이로 창의성 증진(놀잇감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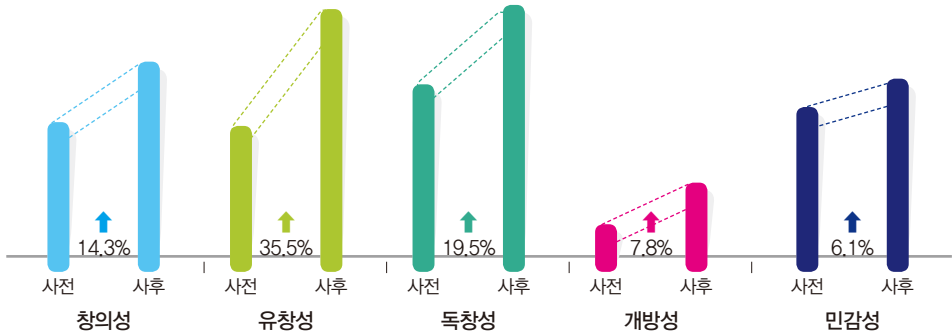
1 두산백과의 "전인교육"을 응용

### 3. 숲교육의 효과

#### ▶ 학습능력 향상(숲은 유아의 창의성, 집중력, 탐구능력을 향상시켜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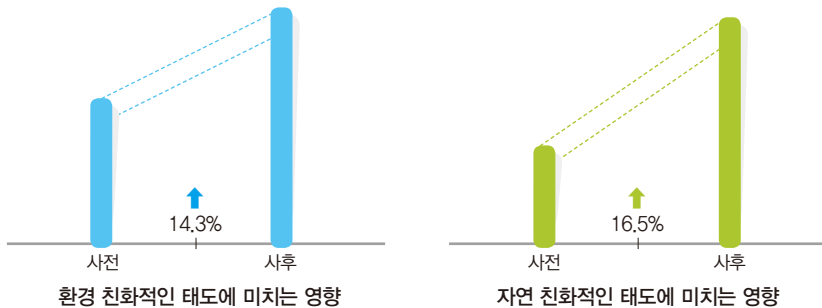
- 유아의 숲활동은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또한 숲 활동은 유아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 주의 집중력과 공간 능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창성 : 창의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관점이나 해결안을 빠르게 많이 떠올리는 능력을 말함.



#### ▶ 환경감수성 증진(숲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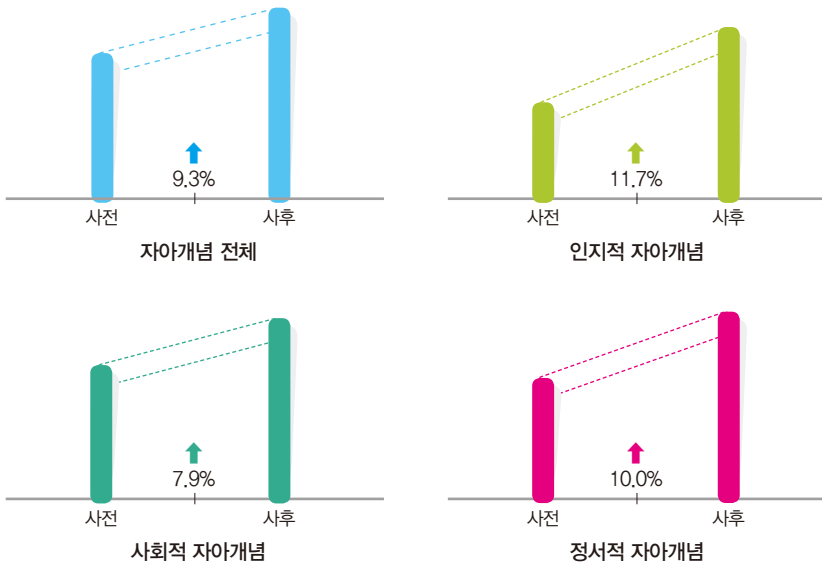
- 숲 활동을 한 유아가 자연환경을 더 선호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0주 동안 정기적으로 숲을 방문한 유아들의 경우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와 자연친화적 태도가 눈에 띄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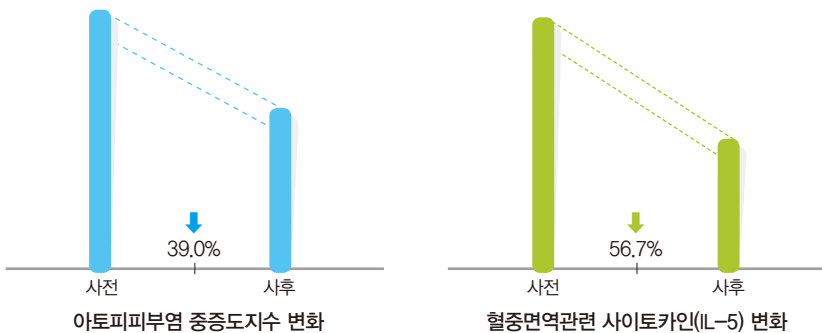
## ▣ 자아개념 형성(숲은 유아의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움)

- 9주간의 숲 활동을 한 유아를 관찰한 결과, 활동 이후 인지적 자아개념과 정서적 자아개념이 모두 증가, 놀이의 유형도 개인놀이에서 협동놀이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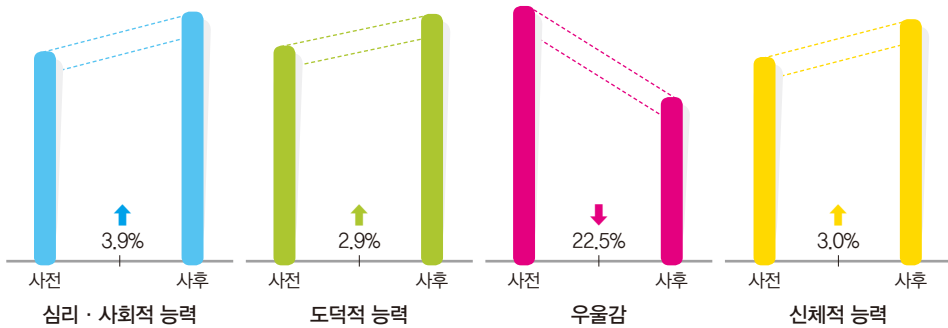
## ▣ 면역력 향상(숲은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켜줌)

- 2박3일간 1·2차 산림캠프를 진행한 결과, 아토피피부염 증증도지수가 감소했으며,
- 아토피피부염의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관련된 사이토카인(IL-5)은 감소하는 등 염증반응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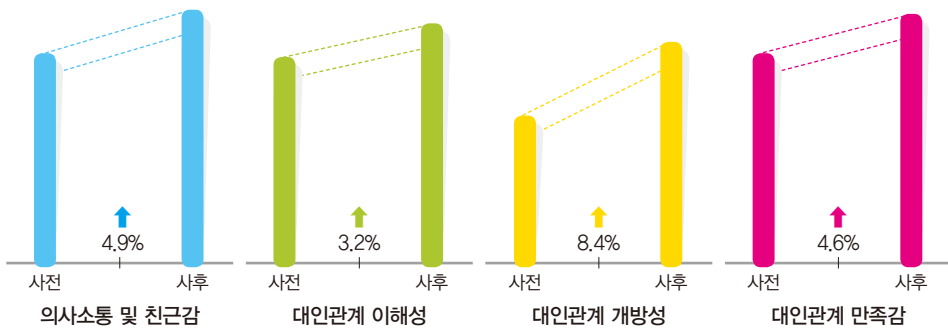
## ▶ 심리안정(숲은 심리안정, 인성형성과 우울증,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줌)

- 숲이 학생의 정서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숲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사회적·심리적 안정, 도덕성, 신체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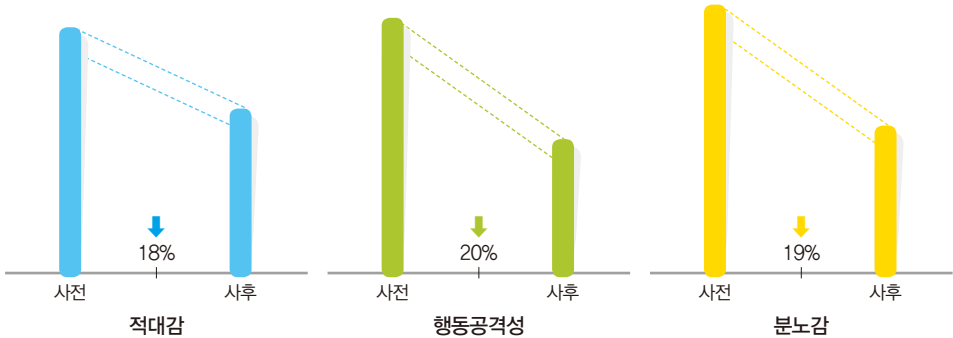
## ▶ 사회성 발달(숲은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사회성 점수가 낮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한 결과, 학습 태도, 친밀감, 정서적 만족 등 친구관계 전반이 개선됨
- 청소년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숲캠프를 진행한 결과, 캠프 참여 전후의 대인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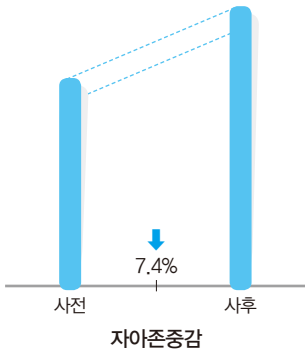
## ▣ 공격성의 감소(숲이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공격성이 감소됨)

- 학교에 숲이 있는 학교 학생들과 숲이 없는 학교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학교에 숲이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공격성이 18~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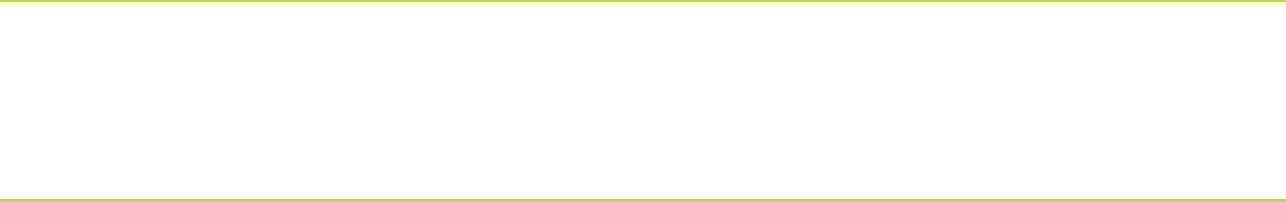
## ▣ 자아존중감 향상(숲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줌)

- 여고생 125명을 대상으로 숲에서 3박 4일간의 캠프를 진행한 결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자아존중감이 향상됨



### 숲교육 효과 출처

- 이정희. 2012. 숲에서의 자연친화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우. 2013. 생태놀이를 활용한 유아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환경 친화적인 태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2005. 숲 체험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 이승민, 서성철, 정지태, 이성재, 박수진, 박찬우. 2011. 숲치유캠프가 소아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임상적, 면역학적 효과. 한국산림휴양학회지
- 이병철. 2001. 초등학생들의 산림체험학습 활동이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림. 2013. 숲치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성함양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수, 신원섭, 연평식, 이정희. 2011. 숲치유 프로그램이 WEEclass 중학생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 손지원, 하시연. 2013. 학교숲 조성에 따른 초등학생의 숲에 대한 태도와 공격성 차이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 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및 절차

---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2. 유아숲체험원 등록절차

## 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및 절차

###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 ⇒ 등록기준은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고 있음
- ⇒ 시행령의 내용은 바탕 색이 있는 표에 기재하였으며, 추가 설명을 표 아래에 기재하였음

#### ▣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

#####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3종 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 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유아숲체험원 활동 범위가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 거리에 위치

## ▶ 규모 및 시설(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

###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 크게 의무시설(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과 임의시설(화장실, 휴게시설)로 구분
- (야외체험학습장)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유아숲체험원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함
  - 야외체험학습장은 공간의 개념으로 반드시 인위적인 시설물이 있는 면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활동 공간으로 구획된 면적을 의미함
- (대피시설)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로 훼손이 최소화된 시설로 조성되어야 하며, 가급적 100㎡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안전시설) 유아숲체험원 내에 절개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
  - 안전시설은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사방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식재를 통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도 가능
- (화장실, 휴게시설 등) 유아숲체험원 입지 특성에 맞게 필요한 휴게시설 및 화장실 등을 설치



## ▣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

###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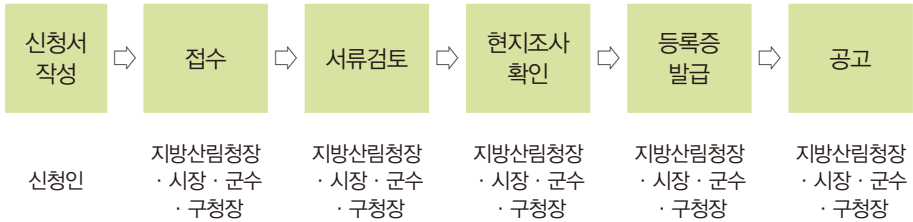
-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계절별 대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함
  - 응급키트 등을 휴대하거나 대피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대피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 운영인력(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

###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 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상시 참여인원은 회당 참여하는 최대 참여 인원 수를 의미
    - 예를 들어 1일 2회(오전반 20명, 오후반 30명)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회당 가장 많은 인원인 30명을 상시 참여인원으로 간주함
  - 보조교사는 특정한 자격 제한이 없으며, 유아들의 안전한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유아교육기관의 인솔교사, 학부모, 유아숲체험원 운영자가 고용한 보조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2. 유아숲체험원 등록 절차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제출 서류
  -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 ▶ 접수

- 지방자치단체 조성 : 지방산림청에서 접수
- 개인·법인 조성 : 지역자치단체 시·군·구청에서 접수

### ▶ 서류검토

- 등록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임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토지·건물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 현지조사 확인

- 면적, 대피소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시설 유무 확인
- 제출된 운영계획의 타당성 여부 확인



### Ⅲ. 유아숲체험원 조성시 고려사항

---

1. 기본방향
2.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3. 공간 구획하기
4. 기반조성시 고려사항
5. 공간 조성시 고려사항

---

## Ⅲ. 유아숲체험원 조성시 고려사항

---

### 1. 기본 방향

#### ▣ 대상지의 세부사항 조사 후 조성 계획 수립

- '2. 대상지 선정' 사항을 고려하고, 대상지의 입지·수종·안전성·주변 여건 등을 조사한 후 계획을 수립

#### ▣ 시설 및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배치

- 대피시설, 야외체험학습장, 휴게시설, 안전시설 등의 공간이 기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

#### ▣ 경관·환경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성

- 주변 자연과의 연속성 및 일체성을 유지하고 시설물 설치 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소재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
- 자연환경의 훼손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훼손지는 복원하며 시설물은 지형변화와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
- 친자연적인(목재, 석재 등) 소재를 최대한 사용하되, 안전 관련 시설 및 자연소재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인공소재 사용

#### ▣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 차단

- 대상지의 위험요소(훼손지역, 낭떠러지, 위해수목, 독초 등)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
- 야외체험학습장내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 공간 조성시에도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대비

## 2.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조건과 규모를 갖출 수 있는지 여부

- 유아숲체험원의 면적은 1만㎡ 이상, 야외체험학습장이 전체 규모의 30% 이상
-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의 경우 5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의 거리에 위치

### ❑ 유아대상 산림교육 수요 파악 및 요구도 조사

-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시 이용이 예상되는 유아교육기관 등의 산림교육 수요 검토
  - 필요시 인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수요 및 요구도 조사 실시
- \*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하나 도보 이동은 물론 차량 이동을 통해 시설 이용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 대상지의 산림이용 행태 조사 및 분석

- 대상지의 산림이용 행태 등을 조사하여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피하도록 함
  - 부득이 한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시 활동장소 분리방안 등을 마련
- ※ 일반인들이 시설을 점거하거나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훼손되는 사례 방지

### ❑ 대상지 내에 주 활동 공간으로 평탄지 확보 가능성

- 다양한 식생, 계곡, 습지 등 교육적 요소도 중요하나 유아들의 집중 활동을 위한 평탄지가 최소 2곳 이상 확보 가능성 파악
- \* 평탄지 1개소의 면적은 1개 교육기관 원아수를 고려할 때 유아 30명 이상이 함께 활동 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 권장
- \* 집중 이용되는 평탄지가 1곳만 확보된 경우,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답압 피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흙미가 떨어지게 됨

- 평탄한 집중 활동 공간을 여러 곳 확보하여, 돌아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 차량 접근 용이성에 대한 고려

- 대상지는 차량 접근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아숲체험원과 멀지 않은 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 현 운영중인 유아숲체험원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이 소형버스(28인승)를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소형버스의 진입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반드시 유아숲체험원 앞까지 차량이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유아들이 준비운동을 겸할 수 있을 정도의 도보접근 거리만큼 하차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음

### ▣ 반드시 임상이 좋은 곳만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는 없음

- 우수조림지 등 교목 위주의 대상지도 좋지만 초본·관목 등 교육자원이 풍부한 숲도 대상지로 적합함
- 임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이라면 대상으로 선정 가능

### ▣ 기타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인지 여부

- 습관적 범람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대상지에서 제외
- 낭떠러지, 깊은 계곡, 유량이 많은 하천, 절토지역 등 위험지형이 있을 경우는 안전시설 및 장치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함
- 멧돼지, 독사 등 위험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출몰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3. 공간 구획하기

#### ▣ 대상지내 세부 공간별 특성을 파악하여 공간 구획

- 숲은 계절별 · 시간대별로 특성이 다르며, 세부 공간별로도 다른 특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음
- 특성별 세부 공간을 구분하여 해당 공간에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각각의 공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

【공간 구획 예시】

구 분	공 간
물이 있는 곳	물놀이 공간
전망이 좋은 곳	명상 · 사색 · 경관 감상 공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새소리, 물소리, 곤충소리 등), 냄새가 나는 곳(꽃, 나무, 토양)	숲소리 듣기, 숲냄새 맡기 등 오감체험 공간
평지(공터)	모임공간
경사가 급한 곳(썰매, 경사오르기 등)	신체발달 공간
촉촉한 물질(나무이끼, 젖은 낙엽이 많은 곳)	생물관찰 공간
돌이 많은 곳, 흙 놀이가 가능한 곳, 밝은 곳, 어두운 곳, 그림자가 잘 드리운 곳, 고사목 · 그루터기가 많은 곳(숲가꾸기 산물이 많은 곳) 등	상상(창의) 놀이 공간

#### ▣ 도면 또는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간 구획

- 조사 대상지의 지리 · 임상 · 수종분포 · 수계 · 식물상 · 경사도 · 방향 · 진입로 · 산책로 등 특성을 분석 후 도면에 공간을 구획
- GIS 분석을 이용하여 특성 분석 후 대상지의 범위와 공간을 구획할 수 있음

## 4. 기반조성시 고려사항

### ▶ 숲가꾸기 사업은 교육적 관점에서 실시

-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림경영 관점’ 이 아닌 유아를 위한 ‘교육적 관점’ 에서 추진
  - 고사목, 벌도목 등과 숲가꾸기 부산물 등도 교육재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괄 정리하지 말고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

### ▶ 훼손지역 또는 기반안정 필요시 복원사업 추진

- 대상지내 훼손지 복원은 경관·생태적으로 안정감 있게 실시하고 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식생 피복이 되도록 실시
  -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되,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에 활용도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
- 절토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실시

### ▶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이동로나 활동이 집중된 곳에 가시 또는 독이 있는 식물은 정리하고 활동에 방해가 되는 나무뿌리 제거 등의 부지정리
  - 위험식물도 교육자원으로 활용·관리가 가능하면 일부 존치 가능
  - 위험요소를 제거하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고 필요시 수목식재 및 재배치 가능



유럽(독일)의 숲유치원



유럽(독일)의 숲유치원



## 5. 공간 조성시 고려사항

### ▣ 대피시설

- 대피시설은 악천후시 대피소, 교구보관, 근무자 대기장소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성
  - 건축법 상 연면적 100㎡ 이하이면 건축 신고 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대피시설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다양하므로 사전에 협의 필요
-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로 설치
  - 천막 형태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도 좋으나, 운영의 용이성을 위해 유아숲지도사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사무소를 둘 것을 권장



지리산유아숲체험원 대피소



인천유아숲체험원 대피소



금오산유아숲체험원 대피소



유럽(독일)의 대피소



대피소 내 교구 보관함



구급함 및 소화기

## ▣ 야외체험학습장

-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
  - 야외체험학습장은 유아숲체험원의 주요 활동 공간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체험 공간을 갖춰야 함
  - 숲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교육적 목적에 맞게 공간을 재편성할 수 있음
- 시설 중심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될 경우, 유아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현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구성
-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주요 활동 공간은 반드시 조성하고 의자나 탁자 등은 주변 자연물을 이용하여 마련하는 것을 권장
- 아래 예시된 여러 형태의 공간을 참고하여 대상지 여건, 지역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공간 조성

### ① 물놀이 공간

- (놀이형) 얇은 계곡부를 정리하여 여름철 물놀이 장소 및 간단한 손씻기 장소로 활용 가능한 곳으로 수심이 깊지 않도록 조성·관리
- (교육형) 물 웅덩이를 활용한 생태연못 조성(수생식물 식재), 개구리·도롱뇽알 등을 관찰할 수 있어 다양한 수서생태계 관찰 가능

- (습지) 습지를 탐방로로 활용할 경우 내구성을 고려하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데크는 이동통로 뿐 아니라 해설판 또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교육요소로 활용
  - ※ 톱밥, 우드칩 등을 깔면 저렴하나 태풍·폭우 등에 취약하고 지속적인 보수 필요



교육용 물놀이터



교육용 물놀이터



놀이용 물놀이터



습지원

## ② 휴놀이 공간

- 휴놀이터에서의 활동은 창의력 발달·정서함양·소근육 발달 등에 도움이 되며 아이들의 움직임이 왕성한 공간 중 하나임
- 애완견 및 조류 분비물 등으로 휴놀이터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시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 탐방객에 의한 훼손(화장실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유아 대상 체험시설 안내판 설치 필요





흙놀이터



흙놀이터

### ③ 밧줄을 활용한 공간

- 밧줄로 인한 안전사고, 분실, 훼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그물망)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그물망처럼 엮어 아래를 통과하는 놀이를 통해 소근육 발달과 균형감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



그물망



그물망

- (매달리기) 밧줄을 이용하여 매달리며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매달리기



매달리기

- (오르내리기) 언덕, 경사지 등에 밧줄을 설치하면 힘든 오르막길을 아이들의 놀이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
- (나무타기) 지하고가 낮고 튼튼한 수종에 밧줄을 사다리모양 등으로 설치하면 높게 매달리거나 직접 나무를 오를 수 있음



오르내리기



나무타기

- (해먹, 그네) 밧줄을 나무에 고정시키고 천을 대놓을 수 있음. 매달리거나 그네로도 활용하고, 누워서 쉬는 등 활용도가 높음
- (밧줄건너기) 나무사이 튼튼한 밧줄 두 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활용 가능



그네



해먹



그네



밧줄건너기



#### ④ 체험 · 관찰 · 창의 놀이 공간 등

○ (모임공간) 유아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새집형 모임시설



모임공간(나무를 이용한 의자)



야외 수업장



야외 수업장



숲 소파



숲 소파(국외 사례)



정글집



파고라

- (균형시설) 징검다리, 통나무 등을 활용하여 균형잡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이는 되도록 낮추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폭신한 곳에 설치



균형시설(징검다리)



균형시설

- (나무시소) 시소의 경우 직경이 균일한 원목을 활용하되 유아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나무를 이용. 시소 양 끝 하단에 마른 소나무잎 더미 등을 두어 내려올 때 충격을 완화
- (인디언 집) 목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작은 아지트인 인디언 집을 꾸며줄 수 있으나 타 이용객들의 잦은 이용 및 훼손으로 해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반 설치 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좋음
- (나무악기) 나무를 활용하여 실로폰, 난타용 북을 만들어 두면 유아들의 스트레스 발산 및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며, 수종을 섞어서 만들 경우 다양한 소리를 연출 할 수 있음



인디언집



나무시소





인디언집



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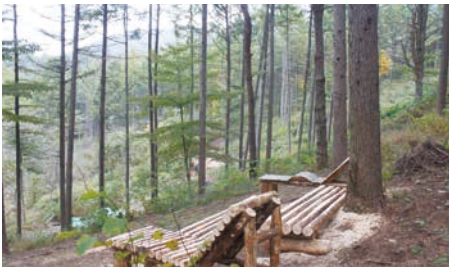
○ (공간 특성에 맞는 야외체험학습장)



소리집(새 소리 등 자연소리를 듣는 공간)



맨발체험장



하늘집(하늘을 누워서 볼 수 있는 공간)



잔디 광장



통나무 교육장



야생화 단지





태풍 도복목 활용 테마교육장(광주)



숲속 도서관

○ (기타 야외체험학습장)



펌프



가방걸이



조각



미로

## ▶ 안전시설

- 위험지역이나 진입이 어려운 곳 등은 목재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사고 방지
  - 유아들의 자유로운 숲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과한 울타리 설치의 지양
  - 울타리는 유아들이 매달리는 등 훼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구성을 고려하여 조성



나무 울타리



나무 울타리(경계용)

- 수심이 깊은 계곡, 낭떠러지 등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고표시와 안전장비를 함께 설치할 것
  - 수심이 깊은 곳은 출입금지 팻말 등 경고표시와 함께 구멍튜브와 밧줄 등 안전장비를 함께 설치
  - 낭떠러지나 절토면 등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울타리를 철저히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고 유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식재를 통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

## ▶ 화장실

- 이동식·간이식 등의 화장실을 설치하되, 주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활용
- 화장실 내부 구조는 성인이 아닌 유아의 성장 및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설계



무주유아숲체험원-대나무 등을 이용한 간이 화장실(앞과 뒤)

### ▣ 유아숲체험원 입구 및 안내판

- 표지판, 입구는 유아숲체험원의 공간을 구분짓는 표시로 일반 이용객들과 활동 공간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가짐
- 유아들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과 소속감을 느끼게 됨
- 숲과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소재와 재료를 사용하고, 인공적인 프린트 보다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또는 만든 작품들을 이용
  - 체험원별로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형화되지 않은 디자인 적용



- 사고방지를 위해 날카로운 재료와 가압식 방부목제 사용은 피하고, 유아들이 오르내리는 나무 주위에는 입구를 두지 않음



유아숲체험원 입구



유아숲체험원 입구



안내판



안내판

## ▶ 기타시설

- 유아숲체험원 사전예약,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가능한 전화 송수신기 가능한 지역일 필요 있음
- 전기 인입이 가능하다면 컴퓨터 사용, 정수기 사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 손씻기 등은 접근 가능한 인근 계곡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하수 등을 활용하거나 물을 끌어올 수 있으면 가급적 설치를 권장



## IV. 유아숲체험원 운영시 고려사항

---

---

## IV. 유아숲체험원 운영시 고려사항

---

### ▣ 유아교육기관 모집

- 공문, 인터넷 등을 이용, 협약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모집 · 확정
  - 모집 공고시 계획보다 2~3배의 기관이 물리는 경우가 많음
  - 추첨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해야 할 경우, 공정한 추첨이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기관별 희망 시간과 날짜를 월별로 사전에 선정하는 것을 권장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로 1일 2회 운영이 가능
  - 대부분의 기관은 오전시간을 선호하며, 격주, 주1회, 주2회, 매일 체험 등으로 참여유형이 나뉨

### ▣ 프로그램

- 월별 · 계절별 프로그램 계획 및 지도안(교안)에 대한 사전 준비
  - 유아숲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지도안(교안)을 작성하며, 월별 대표 프로그램을 사전에 3~4개 선정하여 운영하면 시기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며,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
  - 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로 주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2시간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
  - 보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선택 폭을 고려하여 3~5시간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2~3가지는 갖추는 것을 권장
- 운영자가 변경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마련하기 보다는 작성된 지도안들을 활용하여 각 유아숲체험원 환경과 조건에 맞게 운영
- 프로그램 및 지도안이 주입식, 비자율적인 운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 계획 및 유아들의 자유활동 관찰 기록 등도 포함됨

계절별	활동 예시
봄	봄 새순 관찰하기, 봄나물 캐기, 민들레 훌씨 날리기, 봄의 소리 듣고 표현하기, 풀피리 불기, 곤충처럼 걸어보기, 진달래 화전만들기, 봄별 느끼기, 도롱뇽 및 개구리 알 관찰, 들꽃 말리기
여름	토끼풀 꽃반지 및 목걸이 만들기, 곤충관찰하기, 야생화 관찰, 나무 집짓기, 자연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나뭇잎 잎맥 관찰하기, 탁본뜨기, 꽃목걸이 및 반지 만들기, 만다라 만들기, 씨앗 찾기
가을	벌레 울음소리 듣기, 촉감으로 열매 구분하기, 낙엽 밟기, 가을 곤충 관찰(메뚜기, 잠자리 등) 도토리 팽이 만들기, 자연물로 동물 꾸미기, 자연에서 다양한 색깔 찾기, 낙엽을 하늘로 던지는 낙엽비 놀이, 돌맹이 탐쌍기
겨울	나뭇가지 자치기, 눈썰매타기, 눈싸움, 겨울 동물 먹이 주기, 겨울산행, 나뭇가지 투호놀이, 얼음땀 놀이, 자연물 분류하기, 눈 위에 그림 그리기, 자연물 얼음 모빌 만들기, 달팽이집 놀이, 얼음에 색깔 칠하기, 나뭇가지 높이 쌓기, 이글루 만들기

## ▣ 유아숲지도사

- 법적기준으로 유아 25명당 유아숲지도사를 1명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용상 어려움(휴가 사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2명 이상 고용할 것을 권장
- 참여 기관이 많아 유아숲지도사를 추가 선발해야 할 경우에는 이용밀도가 높지 않도록 야외체험학습장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선발 후 명찰이나 유니폼 등을 제작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과 운영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실습자 과정을 활용
  - 유아숲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는 양성기관의 수업 이수와 함께 30시간 이상의 교육 실습 활동을 하여야 함
  - 교육실습자를 보조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되 단순 관람이 아닌 실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

## ▶ 유아숲체험원 운영 정보 공유 및 홍보

-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전용 블로그 등을 만들어 자체적인 홍보를 권장
  - 유아교육기관의 주요 문의사항은 프로그램 내용, 예약가능일자, 시설에 관한 것으로 홈페이지 보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블로그 또는 카페 등을 활용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활동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변경사항을 고지하는 데에도 유용하며 홈페이지와는 다른 특색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산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사 및 부모 공개 수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함

## ▶ 유관기관과의 협력, 운영성과 발표회, 타 행사와 연계 등

- 지방교육청, 지자체, 참여 유아교육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권장
- 참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개최하거나 식목행사, 숲가꾸기 행사 등 타 행사와 연계 방법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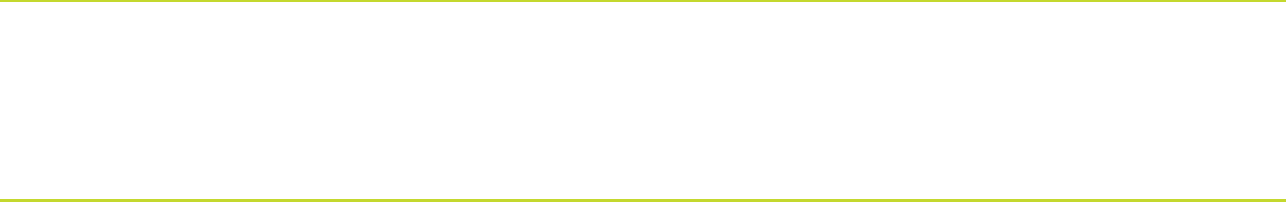


운영 성과 발표회



## ▣ 보험가입 및 안전사고 관련

- 숲에서의 활동은 안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자연 속의 위험요소로 인해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
- 참여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유아숲체험원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여 이중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 \* 참여기관의 보험가입 여부,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사전확인 할 것
- 유아숲체험원이 직접 관련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면적 단위 또는 참여인원 단위로 보험 가입 가능
- 유아숲체험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만들어 유아숲체험원 내에 비치하고, 참여 유아교육기관에 충분한 안내를 실시
  - \* 위험지형, 발생가능재해, 숲 활동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등
- 낮은 환경인 숲에서의 활동이며 유아 특성상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
- 톱, 가위, 칼 등의 위험 도구의 사용은 정기형 또는 어느 정도 숲 활동에 익숙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숲 활동이 처음인 유아는 가급적 자제
-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관에서는 유아숲지도사 또는 운영요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함
  - 지역별 유관기관(소방서, 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V. 안전사고 대비

---

1. 안전사고 개요
2. 위험요소와 대처방안

---

## V. 안전사고 대비

---

### 1. 안전사고 개요

#### ▶ 유아숲체험원에서의 안전사고

- 숲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점과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숲 활동을 경험하였던 유아들의 경우는 오히려 실내 활동에 비해 숲 활동시 사고 발생률이 낮다고 함

\* 실내활동의 중심 일반유치원 안전사고 16건/년, 숲유치원 안전사고 1건/년(윤영란 · 박범진, 2012, 한국임학회 하계총회 학술발표회, p619~622)

- 숲을 처음 접하는 유아나 숲 활동에 경험이 많지 않은 유아의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활동 지역에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아들에게 위험요소와 안전 요령을 숙지
  - 유아숲지도사는 수시로 유아숲체험장의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 ▶ 복장과 준비물

- 유아가 복장을 잘 갖추게 되면 숲 활동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 긴 바지, 긴팔 티셔츠, 방수바지, 방수재킷, 모자, 방수화 등이 필수적이며,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날씨에 따라 탈의
- 신발은 방수기능과 미끄럼이 방지되는 것, 모자는 넓은 창이 있는 것이 좋으며, 날씨에 따라 비옷, 장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아숲지도사의 역할

- 유아숲체험원 내의 위험 요소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함

- 다양한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
- 구급함을 상비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가까운 병원과 응급실의 위치와 연락처, 보고기관·유관기관의 연락처 등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함
- 유아숲지도사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응급처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 □ 안전규칙

- 최소한의 규칙을 지켰을 때,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반복 과정을 통해 유아들에게 인식시킴

- ⇒ 선생님의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이 보이는 곳에서 활동한다.
- ⇒ 열매, 버섯, 산나물, 모르는 풀이나 곤충을 함부로 먹거나 만지지 않는다.
- ⇒ 나무가지를 들고 뛰거나 휘두르지 않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살핀다.
- ⇒ 칼이나 톱 등 도구를 사용할 때는 앉아서 하고 사방 1m 이내에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 ⇒ 간식이나 점심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다.
- ⇒ 숲에 들어가기 전에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약을 바른다.
- ⇒ 높은 나무에 오르려면 선생님에게 알리고 오른다.
- ⇒ 각자의 배낭은 스스로 꾸리고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늘 메고 다닌다.
- ⇒ 선생님이 신호를 보내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선생님 곁으로 모인다.

## □ 사고 발생시의 기본사항

- 유아숲지도사는 당황해 하지 말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기며 사고 일시와 장소를 기록
- 큰 사고일 경우는 사고당사자와 유아들을 분리시켜 목격한 유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
-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통해 보호자와 연락을 하고 상황을 설명

## 2. 위험요소와 대처방안

### ▶ 나무오르기

- 나무에 오르기 전에 부러진 가지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며, 오를 수 있는 나무를 미리 지정해 줄 수 있으며, 이때 땅바닥의 안전상태도 점검
- 유아가 나무오르기에 적합한 신발과 복장을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신체발달 정도가 나무에 오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 필요

### ▶ 독이 있는 식물

- 독이 있는 식물과 독버섯이 잘 자라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제거할 것
- 유아에게 사전에 독이 있는 식물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야 함
- 독성을 가진 풀과 접촉하면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긴 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숲에서 발견된 열매나 버섯 등은 입에 물거나 먹어서는 안되며, 독이 있는 식물은 더더욱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됨
- 독버섯 및 독초를 먹고 중독됐을 경우 빨리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위 속의 내용물을 토해낸 뒤 따뜻한 물을 먹여 응급처치하고 즉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
- 병원에 갈 때 남아있는 버섯이나 식물이 있다면 가져갈 것

### ▶ 꽃가루

- 천식이 있는 유아가 꽃가루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학부모로부터 사전에 유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
- 갑자기 콧물과 기침, 두드러기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알레르기 현상을 의심하고 조치

## ❑ 물가 또는 계곡부

- 개울이나 연못이 있을 경우,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40cm 이상인 경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 유아들에게 활동 전에 물의 깊이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

## ❑ 벌 쏘임

- 벌을 자극하는 향이 진한 화장품의 사용을 피하고 밝은 계통의 옷은 피해야 함
- 벌이 좋아하는 단 음식이나 음료수를 준비하지 않아야 함
- 벌을 만나면 눈을 감고 제자리에 앉거나 몸을 낮추어 벌이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함. 소리를 지르거나 이리저리 뛰어 다니거나 팔을 휘두르면 벌을 자극하게 되어 더 위험
- 벌에 쏘였을 때는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연락
- 쏘인 부위 벌침이 남아있으면 바늘, 칼 등으로 제거  
※ 기구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로 긁어서 제거, 집게는 사용하지 말 것
-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비누와 물로 씻을 것
-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주머니로 찜질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 구급차 도착 전까지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 것

## ❑ 뱀 물림

- 뱀의 머리가 삼각형이고 상처부위에 2개의 이빨 자국이 있다면 독사로 판단
-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연락
- 환자를 안정시키고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고, 민간요법을 지양하며 가능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을 것(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음)
- 물린 지 15분 이내인 경우, 다음의 처치를 실시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 등으로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묶기(딱 조이지 말 것)
  -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 낼 것(입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지 말 것)
  - 구조자는 환자의 상처부위에 직접 입을 대고 독소를 강하게 빨아내고 재빨리 뱉어내는 처치를 몇 번 되풀이 한 뒤 깨끗이 양치질 할 것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물이나 음식을 주지 말 것
-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도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줄 것

### 하지 말아야 할 처치

- ⇒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말 것(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됨)
- ⇒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말 것
- ⇒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말 것
- ⇒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말 것(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음)

### ▣ 벌레물림 사고

- 우리나라 곤충은 맹독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지만 쏘인 사람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상처에 적정한 연고나 물파스 바르기



- 얼음주머니 찜질을 실시(금지 말 것)
-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비누와 물로 씻을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 ※ 구급차 도착 전까지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 것

## □ 골절시

- 골절 부위가 붓고 약간의 압박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됨. 이때 골절 부위를 함부로 움직이면 다친 뼈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건드릴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함
- 먼저 심한 출혈이 있으면 출혈을 멈추게 해야 함
-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함
-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함
- 부위별 골절 처치
  - 척추 골절 :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감은 옷을 따로 대어 환자를 지지
  - 팔의 골절 : 상처 입은 팔을 가슴에 대고 가슴과 팔을 지지하고 가슴과 팔 사이에 부드러운 헝겊 조각 같은 것을 끼워줌
  - 골반 골절 : 다리를 펴준 채로 눕히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하면 무릎 밑에 담요를 말아서 대고 다리를 묶어서 고정하는데 관절 사이에는 패드를 넣어주도록 하고 골반골절 시, 과다한 출혈로 쇼크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
  - 발의 골절 : 아픈 부위의 발을 들고 발바닥에 헝겊을 대고 부목을 받쳐준 후 고정
  - 쇄골 골절 : 환자를 앉히고, 손상된 쪽 팔을 가슴을 지나 반대쪽으로 가게 함. 넓은 천으로 다친 쪽 팔을 가슴에 고정

## ● 부목법

- 부목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러진 뼈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근육, 신경, 혈관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
- 다친 곳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도록 하며 움직이는 경우 다친 곳의 출혈이 많아져서 심하게 부을 수 있음
- 얼음을 대주거나 찬 물찜질을 할 것. 다친 곳을 차게 해주면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통증과 근육 경련을 줄여주기 때문
- 다친 곳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도록 하며 움직이는 경우 다친 곳의 출혈이 많아져서 심하게 부을 수 있음
- 다친 곳을 차게 해주면 혈관을 수축시켜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통증과 근육 경련을 줄여주기 때문에 얼음을 대주거나 찬물찜질을 해줄 것
- 다친 곳을 붕대로 감아주면 압박이 가해져 출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친 곳을 압박 붕대로 감아줄 것
- 피가 나지 않도록 다친 다리와 팔을 올려주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고 가능하면 다친 후 24시간 동안은 다친 곳을 심장보다 15cm 정도 높이로 올려주며 뼈가 부러진 경우는 부목으로 고정 후 다친 부위를 올려줌
-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함

## ▶ 진드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 혈소판 감소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지닌 '작은소참진드기(일명 살인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전신 감염병이며, '작은소참진드기'는 주로 들판이나 풀숲 등 야외에서 서식함

-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 옷을 착용하고 양말에 바지를 넣어 이동하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
- 숲 활동 후에는 2시간 이내에 몸을 씻고, 특히 아이들은 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다리 사이 등 주의 깊게 관찰
- 숲에서 옷을 벗어 놓지 않고, 진드기 식별이 쉬운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야외 활동 시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

-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물 고인 웅덩이 등)을 주의
- 옷이나 노출되는 피부에 인체에 무해한 해충 기피제를 적절히 사용
- 숲 활동 후 고열,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 및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

#### ▣ 가시가 박혔을 때

- 핀셋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함
- 가시가 눈 안에 있다면 억지로 제거하지 말고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요청

#### ▣ 코피가 날 때

- 코를 막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하여 코피를 조절
- 콧등에 얼음주머니(찬물로 해도 가능)를 대거나 코 아래 윗입술 위를 압박
-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도록 함

#### ▣ 동물에 물렸을 때

- 심각한 상처는 출혈을 조절하되 상처를 닦지 않도록 하며, 상처는 의료 기관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건드리지 않음
-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동물이었는지 기억해 사태를 파악
-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자의 처치 방법대로 응급처치

#### ▣ 화상을 당했을 때

- 흐르는 찬물 속에 잠기도록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함

- 화상 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끈 끼는 옷을 조심스레 제거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함
-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의 구멍을 낸 거즈를 덮음
- 물질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 내면 안됨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을 바르지 말고,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함

#### ▶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의식이 있을 때)

- 기도(숨)가 막혔느냐고 물어보아야 함
- 기도가 폐색된 상태라면 유아는 엄지와 검지로 목을 잡는 일반적인 구조요청 신호 자세를 보이게 됨
- 유아가 말을 할 수 있거나,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스스로 뱉어내지 못하면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복부 밀기를 실시
- 환자 뒤에 서서 환자 허리둘레를 두 팔로 감싸 안음(하임리히법)
- 한쪽 주먹을 다른 한손으로 감아쥐고, 안쪽 손은 엄지 쪽이 신체 정중선 배꼽 바로 위로 가게 함
- 안쪽 손을 환자 등 뒤와 위쪽으로 빠르게 밀어 줌
- 복부 밀어주기는 기도폐색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힘으로 실시

#### ▶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의식이 없을 때)

- 환자 머리와 목을 조심스럽게 지지하여 등을 돌려 눕힘
- 환자의 입을 벌려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호흡을 확인
- 숨을 쉬지 않으면 구강 대 구강호흡법을 실시
- 만약, 환자의 가슴이 올라가지 않으면, 환자의 자세를 수정한 다음 호흡을 다시 불어 넣음
- 이번에도 가슴이 올라가지 않으면 흉부압박을 15회 실시
- 가슴밀기를 위한 손 위치는 심폐소생술 실시 때의 손 위치와 동일
- 입안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 기도를 열어주고 호흡을 확인
- 기도를 폐쇄했던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

## ▣ 소아 심폐소생술

- 의식확인 및 119신고
  -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
  - 주변사람들에게 119 호출 및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
- 가슴압박(30회)
  - 압박할 위치는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정 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
  - 한 손으로 손바닥의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부위에 접촉
  -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수직이 되게 위치
  - 한 손으로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와 4~5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줌
- 인공호흡(2회)
  -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
  - 머리를 젖힌 손의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은 뒤 환자의 입에 숨을 2회 불어 넣음
  - 숨을 불어넣을 때 결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

- 무한반복

- 119 도착이나 제세동기 도착 및 패드 부착 시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반복
-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동안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움직임이 명확할 때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간혹 숨쉬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이는 비정상적인 호흡이며 심정지 발생하는 현상의 하나임
- 얇게, 빠르게, 가슴 운동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호흡 패턴 양상을 보고 환자가 숨을 쉰다고 선불리 판단하여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늦추어서는 안됨
- 가슴을 압박할 때 팔꿈치에 힘을 주고 절대 구부리지 않도록 함
- 가슴 압박을 매우 빠른 속도(분당 150회 이상)로 시행하지 않도록 함
- 가슴을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른 가슴 부위를 다시 원상태로 팽창시키는 것도 중요
- 가슴 압박 후 인공 호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맥박이 만져지는지 확인하지 말고 즉시 인공 호흡을 하도록 함
- 인공 호흡은 반드시 턱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기도 개방 유지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함
- 인공 호흡을 2회 연속으로 성공하고자 계속 지속하는 것은 환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인공 호흡 시 환자의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2회만 시행
- 가슴 압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공 호흡을 잘 하려고 가슴 압박을 연기 시켜서는 안됨

### 장 자크 루소의 '에밀'

방 안의 탁한 공기 속에 그를 처박아 놓지 말고 날마다 목장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마음대로 달리고 뛰고 하루에 백 번은 넘어지게 하라. 가끔 넘어질수록 좋다. 그는 당장에 일어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다소 다치게 되는 일이 있다 해도 자유의 기쁨이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나의 제자는 종종 멍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쾌활할 것이다. 방안에 틀어 박혀 있는 여러분의 어린이가 설령 덜 다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을 제약받고 속박당하며 늘 쓸쓸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어린이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률 제12430호, 2014.3.18., 일부개정]</p>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li> <li>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li> </ul> </li> </ol>	<p>[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호, 2014.9.1., 일부개정]</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p> <p>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p> <p>다. 숲길체험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p> <p>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b>제3조(책무)</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

##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운영·관리 현황
3. 숲사랑소년단의 운영·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p>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⑦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	--	--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

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인력 등 운영 현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숲사랑소년단의 시설·사업 및 운영 현황
7. 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법 제6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  
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 · 노동 · 사회정책 · 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산림교육 및 숲해설 · 유아숲 · 숲길체험 지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p><b>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b></p> <p><b>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b>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전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p> <p>6.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b>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b>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p>	<p><b>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p>
-----------------------------------------------------------------------------------------------------------------------------	--------------------------------------------------------------------------------------------------------------------------------------------------------------------------------------------------------------------------------------------------------------------------------------------------------------------------------------------------------------------------------------------------------------------------------------------------------------------------------------------------------------------------------------------------------------------	---------------------------------------------------------------------------------------------------------------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7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li> <li>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li> </ol> <p>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p>
-----------------------------------------------------------------------	---------------------------------------------------------------------------------------------------------------------------------------------------------------------------------------------------------------------------------------------------------------------------------------------------------------------------------------------------------------------------------------------------------------------------------------------------------------------------------------------------------------------------------------------------------------------------------------------------------	-----------------------------------------------------------------------

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발·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별표 2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

<p>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li>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li> <li>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li> </ol> <p>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p> <p>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p>		<p>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 명서</li> <li>2. 주민등록표 초본</li> <li>3. 사진 2장</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사진 2장</li> </ol>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

####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

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

**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내용을 유아숲체험원 등록증과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적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

**차)**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p>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p> <p>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p> <p>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등록·지정의 취소 등)</b></p> <p>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p>	<p>록한 수목원</p> <p><b>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b>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	-----------------------------------------------------------------------------------------------------------------------------------------------------------------------------------------------------------------------------------------------------------------------------------------------------------------------------------------------------------------------------------------------------------------------------------------------------------------------------------------------------------------------------------------------	----------------------------------------------------------------

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5조제2항의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하거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숲사랑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숲사랑소년

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

준) ①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숲사랑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감독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p>단을 설립한다.</p> <p>② 숲사랑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숲사랑소년단의 시설·사업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p> <p>④ 숲사랑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지도·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⑤ 숲사랑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숲사랑소년단 단원의 선발·육성과 활동 지원</li> <li>2. 청소년 산림교육·산림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li> <li>3. 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기술의 연구·교육 및 홍보</li> <li>4. 숲사랑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li> <li>5.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li> <li>6. 청소년 산림교육·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li> <li>7. 그 밖에 숲사랑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li> </ol> <p>② 숲사랑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숲사랑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산림청장은 숲사랑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p>
-----------------------------------------------------------------------------------------------------------------------------------------------------------------------------------------------------------------------------------------------------------------------------------------------------------------	--	----------------------------------------------------------------------------------------------------------------------------------------------------------------------------------------------------------------------------------------------------------------------------------------------------------------------------------------------------------------------------------------------------------------------------------------------------------------------------------------------------------------------------------------------------------------------------------------------------------------------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숲사랑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숲사랑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숲사랑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년단이 아닌 자  
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사랑소  
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  
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  
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  
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  
년단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  
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  
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



<p>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p> <p>4.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취소</p> <p>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p> <p><b>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b>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b>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b>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li> <li>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li> <li>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li> <li>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li> <li>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li> <li>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li> </ol> <p>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p>	<p><b>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 명서</li> <li>2. 주민등록표 초본</li> <li>3. 사진 2장</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li> </ol>
----------------------------------------------------------------------------------------------------------------------------------------------------------------------------------------------------------------------------------------------------------------------------------------------------------------------	--------------------------------------------------------------------------------------------------------------------------------------------------------------------------------------------------------------------------------------------------------------------------------------------------------------------------------------------------------------------------------------------------------------------------------------------------------------------------------------------------------------------------------------------------------------	--------------------------------------------------------------------------------------------------------------------------------------------------------------------------------------------------------------------------------------------------------------------------------------------------------------------------------------------------------------------------------------------------------------------------------------------------------------------------------------------------------------------------------------------------------------------------

	<p>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li> <li>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li> <li>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li> </ol> <p>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li> </ol>	<p>제외한다)</p> <p>2. 사진 2장</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p>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 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p> <p>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p> <p>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p> <p>7.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p> <p><b>제25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26조(과태료)</b>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p>	<p><b>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p>	
---------------------------------------------------------------------------------------------------------------------------------------------------------------------------------------------------------------------------------------------------------------------------------------------------------------------------------------------------------------------------------------------------------------------------------------------------------------------------------------------------------------------------------------------------------	--------------------------------------------------	--

<p>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li> <li>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li> <li>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li> <li>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li> <li>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li>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li> </ol> <p>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산림 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 가. 숲해설가 전문과정

- 1)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17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70	68	102
산림교육론 (15시간 이상)	산림개론, 입학개론	산림 경영·이용·조성 산림환경개론 산림경관 및 미학	4	4	
	숲해설개론	숲해설의 이해 및 원칙 숲해설의 적용과정	3	3	
	산림교육론	산림교육의 이해 사회환경교육론 환경윤리 및 철학	4	4	
	산림과 인간	산림과 인간의 역사 산림문화, 산림휴양	4	4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70	68	102
산림생태계 (45시간 이상)	산림생태학	산림생태계의 특징 산림생태계의 구조	6	6	
	식물의 이해	수목분류학 식물의 특성 및 관찰 실습	18	6	12
	야생동물의 이해 (조류, 포유류)	야생조수 생태학	10	4	6
	곤충의 이해	곤충의 생태학	6	2	4
	산림토양학	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	5	2	3
커뮤니케이션 (20시간 이상)	인간관계학	발달심리 인간관계의 유형	5	5	
	커뮤니케이션 기법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6	3	3
	숲해설 기법	숲해설 기법 이해 숲해설 방법의 이해 및 적용 숲해설 매체 활용법	9	3	6
교육프로그램 개발 (20시간 이상)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이해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8	3	5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습	산림교육교재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12	6	6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5시간 이상)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2	4	8
	야외활동 지도	야외활동 특성의 이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3	1	2
선택과정 (25시간 이상)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등) 파충류, 양서류, 수서생태계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생태공예, 자연놀이 등 체험프로그램		25	8	17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30		30

2) 숲해설가 전문과정은 초본식물(草本植物)·목본식물(木本植物), 곤충, 야생동물 등 산림 및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숲해설을 하거나 주제해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3) 교육과정에서는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되,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5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나.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 1)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2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합계	강의	실습
			210	104	106
산림교육론 (15시간 이상)	산림개론, 임학개론	산림 경영·이용·조성 산림환경개론 산림경관 및 미학	4	4	
	숲해설개론	숲해설의 이해 및 원칙 숲해설의 적용과정	3	3	
	산림교육개론	산림교육의 이해 사회환경교육론 환경윤리 및 철학	4	4	
	산림과 인간	산림과 인간의 역사 산림문화, 휴양	4	4	
산림생태계 (45시간 이상)	산림생태학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특징	6	6	
	식물의 이해	수목분류의 기초 및 도감활용법	18	6	12
	야생동물의 이해	야생조수생태학 및 도감활용법	10	4	6
	곤충의 이해	국내 주요 서식곤충의 이해 및 도감활용법	6	2	4
	산림토양학	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	5	2	3
커뮤니케이션 (15시간 이상)	커뮤니케이션기법	유아 의사소통방법의 이해 의사소통기법 실습	5	5	
	멀티미디어활용법	유아숲활동 기록법 동영상 제작 및 활용법	10	3	7
유아교육 (22시간 이상)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해 유아교육의 역사 및 세계적 동향	6	6	
	유아발달론	태아·영아 발달이론 유아발달이론	8	8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합계	강의	실습
			210	104	106
	숲유치원과 특수아동지도	특수교육의 이해 · 지도 숲에서의 재활, 치유 등 사례	8	6	2
유아숲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63시간 이상)	유아숲생태교육 개론	유아숲 교육의 이해 유아숲체험원의 이해와 필요성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의 이해	10	6	4
	유아숲체험원 운영 · 관리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 관리	5	2	3
	숲유치원 운영 사례	선진국 사례 연령별, 장소별 사례	3	3	
	숲교실 만들기	숲교실의 규율 숲교실의 주의사항	3	3	
	유아숲생활지도	유아 기본생활습관의 이해 숲에서의 유아 생활 이해 · 지도	6	4	2
	유아숲지도사론	유아숲지도사의 소양 및 자질 유아숲지도사의 역할 및 업무	6	4	2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10	4	6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그림책, 생태과학, 생태미술, 동식물교감, 명상, 자연건강 등) 유아숲놀이지도(자연물을 활용한 유아숲놀이 이해, 연령별 · 계절별 · 장소별 숲놀이 지도)	20	5	15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20시간 이상)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12	4	8
	야외활동 지도	야외활동 특성 교육시설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	4	2	2
	아동안전관리	유아 자연생활 건강의 이해 유아 건강생활과 안전교육	4	4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30		30	

2)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은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유아숲생태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1)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1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30	42	88
등산·트레킹 일반 (50시간 이상)	등산·트레킹 역사	등산·트레킹 역사	2	2	
	등산·트레킹 이론	짐꾸리기, 보행, 야영생활 등산 및 트레킹 장비의 이해 산악환경 및 기상 등산·트레킹 체조 숲길이용 철학, 겨울산행	10	3	7
	등산·트레킹 문화	친환경등산, 환경윤리, 등산예절	4	4	
	암벽기초	매듭법, 확보법, 하강법 장비사용법, 기초암벽 실습	14	4	10
	독도법	지도의 이해 나침반, GPS의 이해 및 활용	10	4	6
	숲길체험 안내 실무	숲길체험지도사의 자세(리더십) 등산·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체험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	10	4	6
구조·구급 (20시간 이상)	구조	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	8	2	6
	응급처치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2	4	8
산림환경 (30시간 이상)	숲해설 방법	숲해설의 기법 및 이해	10	5	5
	산림문화	산림과 인간의 역사 산림문화(자산)	5	5	
	야생동식물학	야생동식물의 이해	15	5	10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30		30

- 2)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은 숲길 등에서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도·교육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3. 교육시설의 구성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교육인원 1명당 1㎡ 이상, 총전용면적 100㎡ 이상
- 2) 실습장: 산림교육 전문과정 실습 및 현장학습에 적합한 시설 또는 장소
- 3) 사무실: 사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되, 강의실 등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
- 4) 교재·교구: 산림교육 전문과정과 관련된 도서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을 구비
- 5)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용 기기 구비
-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나.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 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다.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에는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전문인력의 구성

가.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5. 교육과정의 평가 등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평가는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하되, 교과목당 이론 및 실습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나.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참가자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의 자체 활용 및 이력관리 등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산림전문가	배치시설	배치기준
숲해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숲	1명 이상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2명 이상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	1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	별표 3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력의 배치기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숲지도사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명 이상
숲길체험 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별표 3] <개정 2014.9.18.>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 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요소	지정기준
1. 일반기준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을 포함한다)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할 것
2. 기본시설	<p>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1㎡ 이상으로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  나. 실내실습장은 교육인원 1명당 1.2㎡ 이상, 총전용면적 200㎡ 이상일 것. 다만, 2개소 이상의 실내실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하여 총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다. 도서실은 열람좌석 10석 이상으로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  라. 관리실 및 사무실, 안내시설은 사무 및 시설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실 등은 겸용할 수 있다.</p> <p>마. 화장실, 급수·소방 시설, 채광·환기 시설,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방음장치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출 것</p>
3. 지원시설	필요한 경우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4. 전문인력	<p>가. 산림교육센터에는 상근 관리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하고,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p>
5. 프로그램	<p>가. 학교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p>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1호	10	15	2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10	15	20
다.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3호	10	15	2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	300	500
마.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4호	10	15	20
바.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5호	10	15	20
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제6호	10	15	2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9.1.>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4조제2항 관련)

###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육내용	세부 교육내용
가. 산림과 인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및 산림환경</li> <li>○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li> <li>○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li> <li>○ 산림의 개발과 보존</li> <li>○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li> </ul>
나. 산림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생태계의 구성 인자 및 변화</li> <li>○ 산림생태계 내의 에너지 등 순환</li> <li>○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li> <li>○ 산림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관계</li> </ul>
다.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상태에 대한 정의 및 영향 인자</li> <li>○ 산림상태를 측정·평가하는 방법</li> <li>○ 산림상태 측정과 관련된 학문</li> <li>○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기법</li> </ul>
라.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욕구 및 권리</li> <li>○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의무 및 책임</li> <li>○ 산림과 개인의 가치관</li> <li>○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li> </ul>
마. 산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선택</li> <li>○ 문제 발생에 따른 결과예측 방법</li> <li>○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도출 및 해결 방안 개발</li> <li>○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확산 방안</li> </ul>

## 2.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영역	항목	세부 구성기준
가. 교육프로그램	1)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기술</li> <li>○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 대상, 시간), 준비물, 진행 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li> <li>○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li> <li>※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 대상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li> </ul>
	2)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li> <li>○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기술</li> <li>○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기술</li> </ul>
	3)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기술</li> <li>○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기술</li> </ul>
나. 교수요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li> </ul>
다. 교육활동 환경	1) 공간 및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방안) 수립</li> </ul>
	2) 안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수립</li> </ul>
	3)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및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계획 수립</li> </ul>
라. 활동기록관리	활동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li> </ul>
마. 숙박시설관리 (숙박교육인 경우)	숙박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참가자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 공간 확보</li> <li>○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담당자 지정</li> </ul>

비고 : 교육프로그램은 2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활동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위 표의 “가. 프로그램” 영역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별표 2]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4조제5항 관련)

### 1. 인증표시



### 2. 작도법

- 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하고, 안쪽 동심원의 내부에는 산림청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을, 아랫부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명칭과 인증번호 및 산림청 명칭의 문자크기의 비율은 22:16:24로 한다.
- 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고, 색상(도형 및 문자)은 산림청 상징표시의 색상(녹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하며, 활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제9조제3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6개월 중 짧은 기간을 한도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1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나.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2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3호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림청장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4호	시정명령 1개월 또는 운영정지 1개월	시정명령 2개월 또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분야 (√으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숲해설가 전문과정 <input type="checkbox"/>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input type="checkbox"/>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	---------------------------------------------------------------------------------------------------------------

교 육 내 용	교육과목	강사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교 육 시 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적	비고	
	강의실			m <sup>2</sup>	
	실습장			m <sup>2</sup>	
	사무실			m <sup>2</sup>	
	화장실			칸	
	건 물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개조 <input type="checkbox"/> 구조변경			
	소유관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교재 · 교구 및 사무용 기기	교재 · 교구		사무용 기기				소방 · 안전 기구	
	교재	교구	컴퓨터	복사기	팩스	기타	소화기	기타

(뒤쪽)

강사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주요 경력	소지 자격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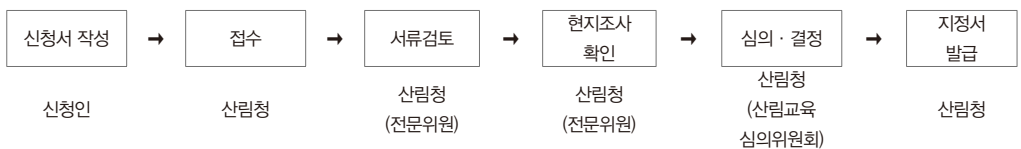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전문분야 (√으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숲해설가 전문과정 <input type="checkbox"/>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input type="checkbox"/>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		
지정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요	프로그램 명칭			
	교육대상			
	교육시간	계	강의	실습
	교육내용			
	진행방법			
	강사자격			
	평가방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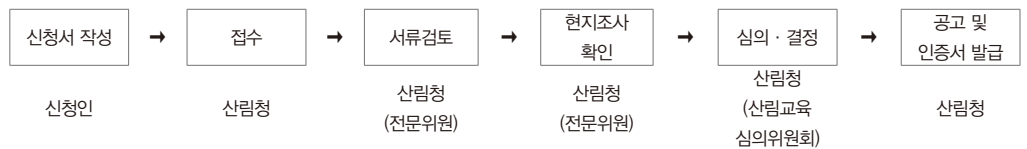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호		
프 로 그 램 명 칭			
인 증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유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가.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 다.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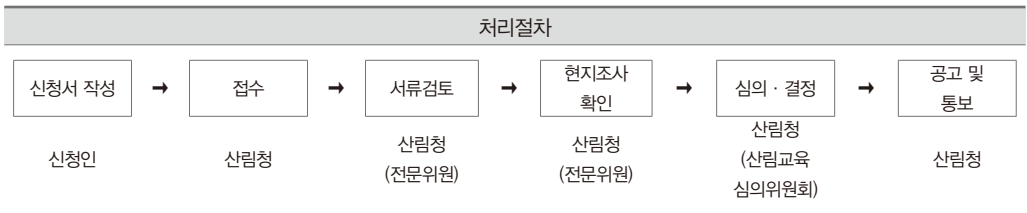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프로그램 명칭		
신청내용	변경 사유		
	변경내용	※ 변경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 ]교부 신청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교부)/10일(재교부)
------	-----	-----	-----------------------

<b>자격 종류</b>			
<b>신 청 인</b>	성 명	(한글)	사진 (2.5×3cm)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자메일
재교부 신청 사유	※ 재교부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b>전문교육 이수 기관 또는 단체</b>	기관 · 단체명		지정번호
	교육기간		이수시간
	평가결과	이론 ( ) 점, 실습 ( ) 점 ※ 실습 기관(단체)명 · 시간 · 내용도 간략히 적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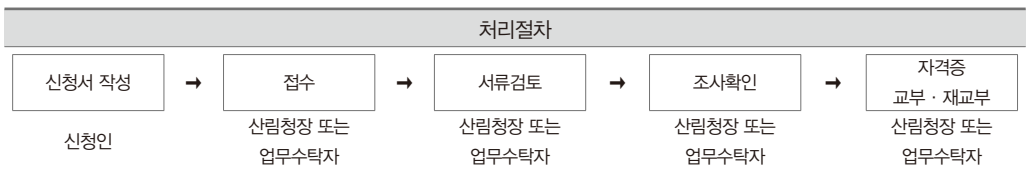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 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 교부의 경우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초본 다. 사진(2.5cm×3cm 반영합판) 2장 2. 재교부의 경우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사진(2.5cm×3cm 반영합판) 2장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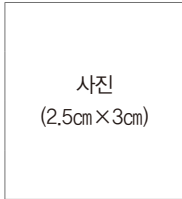


사진  
(2.5cm×3cm)

교 부 번 호: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자 격 종 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 )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54mm× 85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뒤쪽)

연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 유의사항

-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자격증을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대장

자격종류	<input type="checkbox"/> 숲해설가 <input type="checkbox"/> 유아숲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숲길체험지도사							
교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 부 일				비 고
				신규	재 교 부			
					1차	2차	3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위 치					
	명 칭			규 모	(자가 $m^2$ , 임대 $m^2$ )	
	교육생 정원			운영인력	유아숲지도사:   명 보조교사:       명	
	수 강 료			개원예정일		
	교육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구 조	비 고
		야외체험학습장		$m^2$		
		대피시설		$m^2$		
화 장 실			$m^2$			
교구 등	놀이기구	관찰기구	작업도구	일반도구	안전소방기구	
	점	점	점	점	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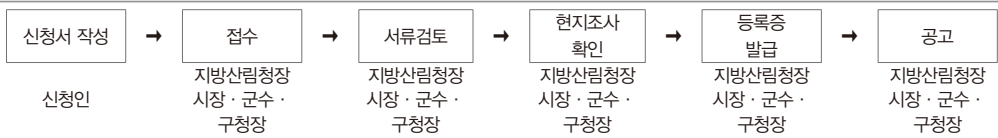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기관 - 제 호							
등록명칭					규모		(자가 m <sup>2</sup> , 임대 m <sup>2</sup> )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치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명	
시설현황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화장실		안전휴게시설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변경사항란		
연월일	등록변경사항	확인인

###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 나.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 다.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 라.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하거나 유아숲체험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록 현 황	등록번호	등록명칭	
	위 치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규 모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변 경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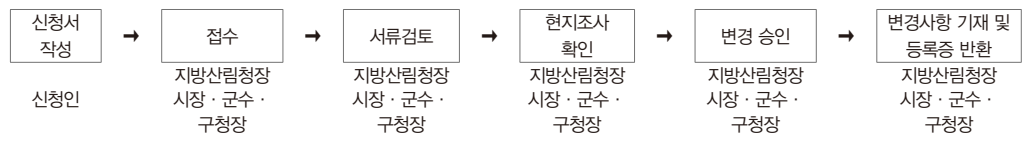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산림교육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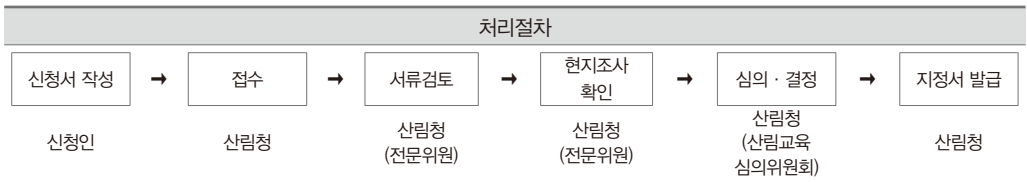
신청내용	위 치					
	산림면적	m <sup>2</sup> (자연림)		m <sup>2</sup> , 인공림	m <sup>2</sup> , 공원	m <sup>2</sup> )
	기본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지원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운영인력	명 (상근관리자	명, 전문인력	명, 전문강사	명)		
프로그램 운영현황	※ 프로그램 명칭 및 운영시간 등을 간략히 적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산림교육센터 지정서

지정 번호	제 호				
센터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치					
규 모	산림면적	m <sup>2</sup> (자연림	m <sup>2</sup> , 인공림	m <sup>2</sup> , 공원	m <sup>2</sup> )
	시설면적	m <sup>2</sup>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산림교육센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다.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시정 [ ]운영정지 명령서

제 호							
처 분 대 상 자	등록·지정 번호	등록·지정 명칭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반사항							
처 분 기 간	시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운영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 분 사 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담당부서 산림교육문화과

인쇄 지그래픽

---

